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3. 10 선고 2022가단11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민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2022. 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8. 15. D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8. 8. 17.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9. 1. 15. 원고에게 각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5. C을 상대로 위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19. 7.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2022. 4. 8.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은 원리금 합계 29,135,264원 및 원금 15,775,830원이다.

라. 한편 F가 2021. 8. 18. 사망하여 그 자녀인 G, C, 피고, H, I과 망 J의 상속인으로서 대습상속인인 K, L, M이 망 F를 상속하였고, 2022. 2. 18. 망 F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C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양등기소,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양수인인바, C은 달리 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을 피고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버지인 망 N이 사망한 이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망 F와 함께 거주하면서 망 F를 간병하고 모셨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망 F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룬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C의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5 내지 13, 15 내지 20, 30,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G의 각 증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 F를 부양한 피고의 기여 정도와 내용,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망 F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131,498,000원(원고가 제출한 소송물가액산정내역서, 이 법원에 현저한 부동산공시지가 참조)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다.

② 망 F의 배우자 망 N은 1996. 11. 10. 망 F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망 F는 1997. 1. 7.부터 1997. 2. 11.까지 인천 소재 O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6. 19.부터 2007. 9. 6.까지 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 1. 7.부터 2014. 8. 4.까지 O병원에서 21회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7. 1. 3.부터 2020. 10. 20.까지 경남 함양군 소재 P정형외과의원에서 41회의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11. 1.부터 2019. 4. 6.까지 경남 함양군 소재 Q병원에서 40회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9. 4. 22.부터 2021. 8. 16.까지 Q병원에서 87회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 F가 인천 소재 병원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을 때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G이 보호자로서 동행하고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996. 10.경 고향인 경남 함양군으로 돌아와 그 무렵부터 망 F가 사망할 때까지 망 F와 함께 거주하였고(피고의 다른 형제들은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지 않았다), 망 F가 받은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함양군 소재 병원에서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에 망 F의 보호자로서 동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치료 과정에서 지출되는 병원비를 부담하였다.

증인 G, C은 망 F가 오랜 기간 거동을 하지 못하여 피고가 망 F를 업고 다녔다고 증언하였고, 망 F에 대한 Q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을 제11호증 제22면), 망 F가 2020. 5. 15.경부터 거동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2020. 5. 15.경부터는 피고가 수면시간을 제외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망 F를 간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 F의 상속인 전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에 동의하였는데, C의 채권자들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까지 자신이 갖는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 F의 상속인 전원은 ‘피고가 각종 병으로 투병하는 망 F를 모시고 고향집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망 F의 상속인들은 망 F와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망 F를 간호하는 방법으로 망 F를 특별히 부양한 피고의 공로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망 F의 상속재산 중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면 망 F의 상속재산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별지